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영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시행계획서

과 제 명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영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기 간	2019년 1월 ~ 7월	추진부서	여성정책실 성평등정책팀	과제유형	연구과제
소요예산	15,000천원	사업유형	자체	발 주 처	-
작성일	2019년 1월 17일		작성 자	이 호 선	

1 추진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여성발전기금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기초하여 남녀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임. 이후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과 사용 용도가 변경되었음.
- 법 개정에 따른 기금과 관련한 주요 변화는 기금의 용도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변경된 것, ‘여성단체’와 ‘여성관련시설’에 대한 지원에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으로 변경된 것임.
- 1996년도에 설치된 서울시 여성발전기금도 2016년 성평등기금으로 명칭과 용도가 변경되어 운영 중임(「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9조에 의거). 서울시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1,193개 단체에 16,606,421천원을 지원함. 2018년도는 38개 단체에 748,851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올해 2019년 지원금액은 9억원으로 책정되어 공모 중임.

【표1】 최근 5년간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지원액	단체수	단체별 평균 지원액
2014	996,771	74	13,469
2015	598,646	45	13,303
2016	695,000	44	15,795
2017	840,537	54	15,605
2018	748,851	38	19,707

출처: 「2018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

【표2】 성평등기금 사업 분야 및 주제(2018년, 2019년)

연도	지정공모 분야	자유공모 분야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 · 여성의 경제 역량강화 · 일·가정 양립 확대 ·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뿌리 네트워킹 지원을 통한 여성발전 기여 · 여성 지도자 양성 · 노년 여성 지원 · 청년의 저출생·성평등 논의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성폭력·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 성평등 콘텐츠 개발(제작) 통한 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 · 1020세대를 위한 성평등 활동 참여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제 역량강화 · 일·가정 양립 확대 ·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 일반 지방기금과 같이 여성발전기금, 성평등기금도 존재논란이 있어왔음. 그 이유는 첫째, 설치 목적의 중복성, 타기금과 사업내용의 중복성, 예산사업과의 유사성이 있다는 점, 둘째,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일반회계에서 진출되는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점임(성향숙, 2016). 실제 경상남도, 충북 충주시, 성남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평등기금이 폐지되었음.
- 한편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¹⁾
 - 사업 선정과 관련 사항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일부 선정

1)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및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평가 결과보고서(2015년-2018년), 사업담당자 면담내용 참고.

된다는 문제점이 다년간 제기됨. 즉 성평등 관점이 부족한 사업이 선정되는 것임.

- 사업 지원과 관련한 사항으로, 짧은 사업 기간에 비해 교육, 모니터링, 중간 평가 등 많은 관리체제로 인하여 단체 부담이 큼. 단체마다 필요 지원과 그 수준이 다름에도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 사업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 사업 평가 결과가 선정결과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제일 낮은 등급만 선정에서 제외). 평가 증빙서류가 복잡하고 지침이 불명확하다는 점.

○ 이러한 맥락에서 무엇보다 성평등기금 사업 운영차원의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²⁾ 서울시에서 약 20년간 기금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최근 여성발전기금에서 성평등기금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은 지금까지 검토된 바 없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성평등기금 사업의 운영차원에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서울시 성평등의 실질적인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과제내용

□ 성평등기금의 역사와 운영 현황 분석

○ 여성발전기금 설치 배경, 성평등기금으로의 변화, 법적 근거 분석

○ 성평등기금의 운영 현황 분석

- 중앙정부 및 서울시 기금 운영 현황

- 서울시 기금사업의 특성 및 변화 추이 분석

: 기금 사업 분야 및 주제, 선정 사업 내용, 평가 의견 등

2) 초저금리 시대 진입 및 장기화로 이자수익금 감소,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등의 기금의 재정적 차원에
서의 운용에 대해서는 다른 전반의 기금과 함께 별도로 연구되어야 할 사항임.

□ 성평등기금 사업의 실태 및 수요 분석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성평등기금 사업의 실태 및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표3】 설문조사 개요(안)

조사대상 범위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종사자 (기금사업 참여 단체)
표본 수	· 250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을 통한 온라인조사

【표4】 설문조사 주요내용(안)

구분	조사 내용*
단체 현황	· 설립목적 및 연도, 주요 사업 내용, 직원 및 회원 수
기금사업 운영 실태 (사업 효과 포함)	· 여성발전기금 추진 경험 여부, 성평등기금으로 변화에 대한 체감도, 사업 신청 시, 사업 운영 과정, 사업 평가 과정에서의 제약과 도움이 되는 점 · 기금의 사업 참여단체에 대한 효과, 기금의 서울시 성평등 실현에 대한 효과
개선방안 및 수요	· 개선이 우선 필요한 사항, 도입이 필요한 제도 및 지원

*면접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

- 기금사업 참여 단체, 서울시 및 자치구 기금 담당 공무원, 지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평등기금 사업의 실태 및 수요에 대한 면접조사 실시
 - 타 지방자치단체 기금 담당 공무원, 다른 공모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함하여 내용에 대한 비교

【표5】 면접조사 개요(안)

조사대상	· 서울시 소재 성평등기금 사업 참여 단체, 서울시 및 자치구 기금 담당 공무원, 지원업무 담당자 · 인천, 경기 기금 담당 공무원, 재단 등의 공모사업 담당자
참여자 수	· 16명
조사방법	· 비구조화된 설문을 통한 대면조사

표6 면접조사 주요내용(안)

구분	조사 내용
인적사항	· 성별, 연령, 소속, 근무 경력 및 직위, 업무 등
기금사업 운영 실태 (사업 효과 포함)	· 성평등기금으로 변화에 대한 체감도, 기금의 단체에 대한 효과, 기금의 서울시 성평등 실현에 대한 효과, 사업 운영에 제약 요소 및 긍정적 요소, 사업 운영 지원에 대한 의견 · 타 지방자치단체 사업 및 다른 공모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
개선방안 및 수요	· 기금 운영의 방향성, 개선이 우선 필요한 사항, 도입이 필요한 제도 및 지원

성평등기금 운영 개선방안 제언

- 성평등기금 사업 실태의 문제점 개선, 관계자의 수요를 반영한 개선방안 도출

3 과제추진방법

문헌조사 및 자료 내용 분석

- 여성발전기금, 성평등기금 관련 연구 등 선행연구 분석
- 기금 관련 법, 지침 등 검토(「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사업 지침 등).
- 중앙정부 및 서울시, 자치구 기금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및 성평등기금 사업 평가결과 보고서 등 분석, 타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모사업 관련 참고자료 분석

양적조사 및 질적조사 실시

- 양적조사 실시: 기금사업 참여단체 종사자(250명)
- 질적조사 실시: 기금사업 참여 단체, 기금 담당 공무원, 지원업무 담당자, 타 지방자치단체 기금 담당 공무원, 다른 공모사업 담당자(16명)
- 사업의 실태 및 수요 조사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

- 1차 착수자문회의 실시: 연구 방향 및 내용, 연구방법 등 자문
- 2차 자문회의 실시: 결과 분석에 기초한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 등
- 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4 과제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input type="checkbox"/> 과제시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input type="checkbox"/> 착수회의 개최 및 착수보고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기금 사업 현황 분석								
<input type="checkbox"/> 실태 및 수요조사 실시								
<input type="checkbox"/> 중간심의 및 결과 반영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도출, 전문가 자문								
<input type="checkbox"/> 최종심의 및 결과 반영								
<input type="checkbox"/>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결과보고								

5 기대효과

-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운영의 타당성 제고
-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질적 제고

6

예산 활용 계획

주요항목별 집행계획

항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
계	15,000	
회의운영비	2,040	
세부내역		- 자문회의 2,040 · 자문수당 150,000원×4명×3회 = 1,800,000원 · 진행경비 20,000원×4명×3회 = 240,000원
조사 및 평가비	4,938	
세부내역		- 설문조사 3,018 · 설문조사 10,000원×250명 = 2,500,000원 · 정리원 74,000원×1명×7일 = 518,000원 - 면접조사비 1,920 · 참석수당 100,000원×4명×4회 = 1,600,000원 · 진행경비 20,000원×4명×4회 = 320,000원
일반운영비	933	
세부내역		- 자료구입비 50 · 20,000원×2권 = 40,000원 - 자료인쇄비 850 · 8,500원×100부 = 850,000원 - 자료발송비 33 · 10,000원×3.3회 = 33,000원
기간제근로자	7,089	
세부내역		- 위촉연구원 6,444 · 2,148,250원×1명×3월 = 6,444,750원 - 법정부담금 644 · 6,444,750원×10% = 644,475원

7

인력 활용 계획

책임연구자 : 1명(이호선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 1명(약 3개월)